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301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유리

변론 종결2021. 11. 4.

판결 선고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 3. 20. 접수 제6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 및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개명 전 이름 :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4. 6. 16.(F)	2021. 6. 11.	95,000,000	2014. 6. 17.(기업은행)	100,000,000
2	2020. 2. 13.(G)	2023. 2. 10.	120,000,000	2020. 2. 14.(D은행)	120,000,000

나. 소외 회사는 2020. 9. 18.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12. 24. 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76,846,631원(= 원금 76,000,000원 + 이자 846,6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2020. 12. 29. 기준으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77,052,101원(= 76,846,631원 + 법적절차비용 104,412원)이다.

다. B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 3. 20. 접수 제68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보유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사천시 H에 있는 I아파트 J호)	172,000,000	2021. 1. 25. K 조합 회신
2	진주시 L 토지·건물	400,000,000(2020. 매매가)	갑 11-1~5
3	위 M		
4	위 N		
5	위 O		
6	위 P		

1	이 사건 부동산 (사천시 H에 있는 I아파트 J호)	172,000,000	2021. 1. 25. K 조합 회신
7	진주시 Q아파트 R호	208,000,000	갑 11-6
합계금	780,000,000		

2) 소극재산

1	원고	대위변제원금	76,846,631	갑 3
2	K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	2021. 1. 25. K조합 회신
3	S은행	2018. 8. 31. 대출	3,750,000	
4	U은행	2019. 2. 11. 대출	140,707,000	
5	V	2019. 6. 17. 대출	55,840,000	
6	W카드	2018. 8. 31. 대출	2,449,000	
7	X조합	2017. 12. 20. 대출	231,929,000	2021. 3. 14. T 회신 12,13,22/27면
8	Y	2016. 10. 7. 보증채무	42,389,000	
9	Z	2015. 9. 17. 보증채무	69,955,000	
10	AA	2019. 6. 19. 보증채무	80,177,000	
11	AB(주)	2014. 8. 18. 보증채무	46,219,000	
12	AC	2017. 2. 22. 보증채무	163,568,000	
13	AD	2016. 2. 18. 보증채무	367,127,000	
14	AE	2015. 3. 10. 보증채무	9,365,000	
합계금	1,390,321,6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조합 및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한 달 전인 2020. 2. 13. 소외 회사와 별도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기업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3. 20.부터 석 달 이내인 2020. 6. 16. 카드 연체가 시작되는 등 그 무렵 경영악화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2020. 9. 18. 부실처리되어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2020. 12. 24. 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78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1,390,321,63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B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17. 12. 20.경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2020. 3.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연히 받아야 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고 생각했을 뿐, 이것이 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 즉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만

별지